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203638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20363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145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박관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선우, 정한나

변론 종결 2019. 12. 17

판결선 고 2020. 1. 21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145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7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가입계약금 환불은 피고의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에 해 당하여 피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바,피고의 총회에서 이에 대하여 의결한바 없으므로원고에 대한 계약금 환불은 불가하다.

나. 판단

(1)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 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 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 · 입증하 여야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판결 등 참조).

(2) 을 제1, 7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 어 보면, 피고 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2015. 12.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서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 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078 판결 참조), 그 실질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것 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환불이 피고의 규약에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 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원 총회 결의사항은 위와 같이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위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한 위 계약 해 제 및 계약금 환불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오병희 판사 정다주 판사 김진영